

● 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23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

표 시 사 항

가. 일반 작성 원칙

-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추가로 기재한다.
-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양식 및 규격

- 1) 양식

명칭

그림문자

- 신호어 :
- 유해위험문구 :
- 예방조치문구 :
- 공급자 정보 :
- 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 용기·포장의 용량 | 크기 |
|-------------------|-----------------------------------|
| 5 L 미만 | 용기·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
| 5 L 이상 50 L 미만 | 90 cm ² 이상 |
| 50 L 이상 200 L 미만 | 180 cm ² 이상 |
| 200 L 이상 500 L 미만 | 300 cm ² 이상 |
| 500 L 이상 | 450 cm ² 이상 |

-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²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 마) 1 L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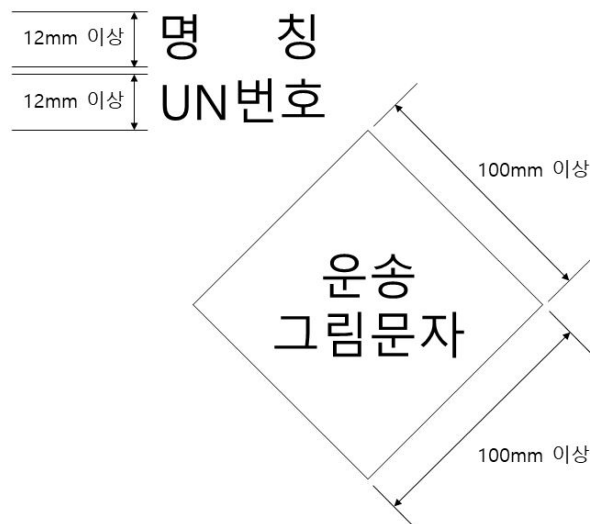
바) 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는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인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류별, 품명, 위험등급,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및 다음의 류별구분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사)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본 고시 별표1 표시사항에 적합하게 기재한 경우 나목2)바)는 생략할 수 있다. 단, 해당 화학물질이 국제연합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UN GHS) 분류상 물리적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나목2)바)를 기재해야 한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2) 규격

-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 L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 L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 L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